

3. 학술정보처 운영규정(도서관 운영 규정)

현행	개정(안)	비고
<제7편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>	<제3편>	규정 분류 변경 (학술정보처: 부속기관 또는 부설연구소가 아님)
학술정보처 규정	도서관 운영 규정	불필요한 조항(정보화 개발, 시스템 운영 등 일반 업무에 관한 사항) 삭제에 따른 규정 성격 변경
제1장 총칙	제1장 총칙	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"본 대학"이라 한다) <u>학술정보처</u> 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"본 대학"이라 한다) <u>도서관 및 출판부 운영</u>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출판부 업무 포함
제2조(임무) <u>학술정보처</u> 는 연구중심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정보, 시스템 개발 및 시스템 운영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지원한다.	제2조(임무) <u>도서관</u> 은 연구중심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<u>학술정보 수집 및 제공과 이용자 공간 관리 및 출판지원 등 관련 업무를</u> 원활히 수행하고 지원한다.	
제2장 조직 및 기능	(삭제)	
제3조(학술정보처장) 이 규정에서 정하는 학술정보처장은 직제규정을 따른다.	(삭제)	불필요 조항 삭제
제4조(조직) 이 규정에서 정하는 학술정보처 조직 및 조직의 업무분장은 직제규정을 따른다.	(삭제)	
제5조(업무분장) 이 규정에서 정하는 학술정보처 각 팀의 업무분장은 직제규정을 따른다.		
(신설)	<u>제3조(출판심의위원회) 출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판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을 따른다.</u>	출판부 신설 반영
제6조(인사) 이 규정에서 정하는 <u>학술정보처</u> 소속직원의 자격은 아래의 각 <u>항</u> 에 따른다. 1. <u>정보서비스팀</u> —소속직원중 3/4이상은 전문직 사서(1급, 2급 정사서, 준사서)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. 단 준사서가 정사서의 1/2을 초과할 수 없다. 2. 전산직은 시스템개발, 운영 및 이용자원에 필요한 전문직 직	제4조(인사) 이 규정에서 정하는 <u>도서관</u> 소속직원의 자격은 아래의 각 <u>호</u> 에 따른다. 1. <u>소속 직원 중</u> 3/4이상은 전문직 사서(1급, 2급 정사서, 준사서)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. 단 준사서가 정사서의 1/2을 초과할 수 없다.	전산업무에 관한사항 삭제
	(삭제)	

원을 둔다.		
제7조 삭제(2007.4.20)	<u>(삭제)</u>	
제8조(대내·외연구과제수행) <u>학술정보처는</u> 대내·외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며, 수행에 따른 세부 절차 및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	제5조 (대내·외 연구과제수행) 대내·외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며, 수행에 따른 세부 절차 및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	
제9조 삭제(2007.4.20)	<u>(삭제)</u>	
제10조(공개강좌) (생략)	제6조 (공개강좌) (현행유지)	
<u>(신설)</u>	<u>제2장 도서관 운영</u>	도서관 운영에 관한 장 분리
제11조(도서구입) (생략) 제12조 삭제(2007.4.20) 제13조 삭제(2007.4.20)	제7조 (도서구입) (현행유지)	
제14조(자산등록) (생략) 제15조 삭제(2007.4.20) 제16조 삭제(2007.4.20) 제17조(장서의 점검 및 제각) (삭제)	제8조 (자산등록) (현행유지) 제9조 (장서의 점검 및 제각) (현행유지)	
제18조(열람자격) 도서관 출입 및 열람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포항공과대학교 구성원(교원, 학생, 직원 및 연구원) 및 배우자 2.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직원 3. 포스코교육재단 교원 및 직원 4.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직원 및 연구원 5. 포스코 직원 6. 기타 학술정보처장의 승인을 얻은 자	제10조 (열람자격) 도서관 출입 및 열람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포항공과대학교 구성원(교원, 학생, 직원 및 연구원) 및 배우자 2.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직원 3. 포스코교육재단 교원 및 직원 4.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직원 및 연구원 5. 포스코 직원 6. 일반회원 7. 기타 학술정보처장의 승인을 얻은 자	도서관 회원제에 따른 대상 추가 (현행 누락 반영)
제19조 삭제(2007.4.20) 제20조(대출자격) (생략) 제21조(대출권수 및 기간) (생략) 제23조(대출도서의 기한내 반납) (생략)	제11조 (대출자격) (현행유지) 제12조 (대출권수 및 기간) (현행유지) 제14조 (대출도서의 기한내 반납) (현행유지)	

<p><u>제24조(지정도서) (생략)</u> <u>제25조(정보서비스) (생략)</u> <u>제26조 삭제(2007.4.20)</u> <u>제27조 삭제(2007.4.20)</u></p>	<p>제15조(지정도서) (현행유지) 제16조(정보서비스) (현행유지)</p>	
<p>제28조(제재)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자료이용을 제재할 수 있다. 1. 대출자료의 ...(중략)... 2. 도서관 자료를 1차 무단반출자는 6개월간 대출을 중지하며, 2차 <u>무단반출자</u>는 1차기간 종료후 6개월간 추가로 대출을 중지하고 소속부서에 통보한다. (후략)</p>	<p>제17조(제재)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자료이용을 제재할 수 있다. 1. 대출자료의 ...(현행유지)... 2. 도서관 자료를 1차 무단반출자는 6개월간 대출을 중지하며, 2차 <u>무단반출자</u>는 1차기간 종료후 6개월간 추가로 대출을 중지하고 소속부서에 통보한다. (후략)</p>	<p>오타 수정</p>
<p><u>제29조 삭제(2007.4.20)</u> <u>제30조(변상) (생략)</u> <u>제31조(연체 및 미반납도서에 대한 강제 조치) (생략)</u> <u>제32조 삭제(2007.4.20)</u></p>	<p>제18조(변상) (현행유지) 제19조(연체 및 미반납도서에 대한 강제 조치) (현행유지)</p>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3장 정보화 개발</u></p> <p><u>제33조(정보화 개발절차)</u> <u>제34조(운영업무의 유지보수)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삭제)</p>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4장 시스템운영</u></p> <p><u>제35조(기능)</u> <u>제36조(시스템 이용료)</u> <u>제37조(교육)</u> <u>제38조(전산자원 이용기준)</u> <u>제39조(정보윤리기준)</u> <u>제40조(기타 운영세칙 및 내규)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삭제)</p>	
<p><u>제5장 학 술 정 보 운 영 위 원 회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※ 위원회 규정에 의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삭제)</p>	

<p>(신설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3장 출판부(POSTECH Press)</u></p> <p><u>제20조(업무) 교내 출판에 관한 업무는 각 호와 같으며 학술정보팀에서 관장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교내 출판 지원</u> <u>2. 출판심의위원회 운영</u> <u>3. ISBN 신청</u> <u>4. 국립중앙도서관 도서 납본</u> <u>5. 교내 발간물 수집 및 관리</u> <p><u>제21조(출판신청) 출판물을 발간 의뢰하려는 자는 도서 출판심요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출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제22조(출판심의) 출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도서에 한하여 출판을 진행한다.</u></p> <p><u>제23조(저작권 및 출판권) 출판된 도서의 저작권은 저자에게, 출판권은 대학에 귀속된다.</u></p> <p><u>제24조(발행인 및 발행처) 모든 출판물의 발행인은 총장이 되며, 발행처는 출판부가 된다.</u></p> <p><u>제25조(인세 및 수익금) 판매수익이 출판비용을 초과하는 경우, 저자에게 인세 또는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	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 칙</u></p> <p><u>이 규정은 2017년 00월 00일부로 이전의 학술정보처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한다.</u></p>	